보다나은 정부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보도참고자료

| | |
|---|---|
| 배 포 | 2019.2.1.(금) |
| 담 당 과 |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<br>(☎043-719-3204) |
| 과 장 | 안영순<br>(☎043-719-3203) |
| 사 무 관 | 설찬구<br>(☎043-719-3204) |

##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축산물 규제 개선

###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최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이 개정*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은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 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.

*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개정·공포(법률 제15946호, '18.12.11., 시행 '19.6.12.)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▲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▲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▲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입니다.

○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, 보고대상 이물, 이물 보고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*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금속, 유리, 기생충 및 그 알, 동물 사체 등

○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, 지정절차,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,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.

○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, 경고,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)→법령·자료→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첨부>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OPEN



OPEN

**첨부** **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**

## ❑ 주요 개정 내용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---|
| **[시행령]** | | |
| 1. 도축검사원 채용·배치 예외 작업장 명확화<br>(★ 법률 개정 후속) | <신 설> | o 만조(滿潮)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(제주도 본도(本島) 제외)에 위치한 도축장은 검사원 배치 예외 인정 |
| 2.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 예외 확대<br>(★규제개혁) | o 포장축산물에 대해 전화 주문, 온라인 등에서 판매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*<br>* 닭·오리 식육, 포장육 판매: 식육판매업<br>* 포장된 달걀 판매: 식용란 수집판매업 | o 슈퍼마켓등 경영자가 전화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포장 축산물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예외 인정<br>o 온라인 등에서 중개형태로 포장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예외 인정 |
| | o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자신이 만든 포장육의 판매에 대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규정 불명확 | o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|
| 3.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자 및 이물관리 권한 위임근거 마련<br>(★ 법률 개정 후속) | <신 설> | o 이물 발견보고자는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의 영업자임<br>o 식약처장의 이물 발견보고 및 혼입 원인조사 권한 지방청장으로 위임 |
| 4.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<br>(★ 규제개혁) | o 영업정지,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마련<br>*영업정지: 게시일로부터 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<br>*영업소 폐쇄(영업 취소): 게시일로부터 2년<br>*부적합 축산물: 게시일로부터 6개월 | o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, 경고, 시설개선 명령 처분에 대한 공표 게재기간 마련 |
| **[시행규칙]** | | |
| 1.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<br>(★ 법률 개정 후속) | <신 설> | o 지정기준, 지정사항 변경 및 변경절차, 준수사항, 지정절차, 지정취소 기준 및 고시위임 근거 마련 |
| 2.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 | <신 설> | o 지정절차, 지정기준, 지정사항 변경, 준수사항, 지정취소 기준 및 고시위임 근거 마련 |

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---|
| (★ 법률 개정 후속) | | |
| 3.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세부사항 마련<br>(★ 법률 개정 후속) | <신 설> | o 보고대상 이물종류, 이물 보고절차 및 고시 위임근거 마련<br>o 영업자가 이물 발견보고를 지체없이 한 경우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조건부 감면(시정명령) |
| 4. 축산물의 자가품질 검사 효율성 제고<br>(★ 규제개혁) | o 품목별로 하되 유형별 검사 가능 | o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|
| 5. 도축업의 도살·처리 대상 가축 명확화<br>(★ 규제개혁) | <신 설> | o 도축장에서 가축* 및 가축외동물** 외에 다른 동물의 도살·처리 금지<br>* 소, 말, 양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당나귀<br>** 타조·오소리 |
| 6.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완화<br>(★ 규제개혁) | o 종이문서 인정 | o 전자문서도 인정 |
| 7. 기타(★ 입법보완) | | o “영유아 대상 제품여부” 확인토록 품목제조보고서 서식 정비 |